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

1. 개정시행일 : 2015.06. 02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 조 ~ 제 8 조 (생략)	제 1조 ~ 제8조 (좌동)	
제 9 조(출금 및 이체한도)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(이체금액 포함)는 은행이 정한다.	제 9 조(출금 및 이체한도)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(이체금액 포함)는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.	이용자(고객) 한도 지정 가능 추가
제 10 조 (생략)	제 10 조 (좌동)	
제 11 조 (서비스의 제한)	제 11 조 (서비스의 제한)	
①~⑤ (생략)	①~⑤ (좌동)	
⑥ 1 회 3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.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	⑥ 1 회 3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.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	지연인출 시간 확대 반영
⑦ (생략)	⑦ (좌동)	
제 12조 ~ 제 16조 (생략)	제 12조 ~ 제 16조 (좌동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